

- 학생회비 관련 방침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은 자문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써 원본은 추후 필요시 공유할 예정입니다.

## 1. 사안의 개요 및 현재 상황 평가

본건 대학원 학생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게시한 해당 게시물의 표현 정도는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김\*석/미남’ 수준으로 전공/성명의 일부/회비 납부 여부를 알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명예훼손(정통망범위반)관련 리스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공연성’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 등을 요건으로 하고, 만약 ‘공공의 이익’이 해당 행위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부정되기는 어려우나,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첫째로, 위와 같은 기재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생회비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뿐이므로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부족합니다. 이와 달리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거나 사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미남 사실이 바로 도덕적 해이나 평판 저하 등의 문제로 직결되지 않는 학생회비의 경우에는 그 미남 사실 자체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둘째로, 본건 대학원 학생회의 과거 사례 또는 타학교의 사례(미남 학생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등에 비추어 본건 기재 정도가 비교적 구체적이거나 중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 점, 학생회 입장에서는 학생회비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본건 게시 행위가 ‘해당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로서 고의 또는 ‘비

방할 목적' 이 포함된 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 셋째로, 위 내용 게시 행위는 학생들 대다수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회비 납부 여부만을 간단히 공지한 행위 역시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관련 리스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처벌 규정은 결국 행위자가 '개인정보처리자' 일 것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위 처벌규정의 전제가 되는 금지규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음),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 위 법률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게시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만한 내용은 해당 학생의 ‘성명’에 불과하고, 납부여부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납부 여부’에 관한 기재 자체가 ‘성명’과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위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제71조) 역시도 당연히 그 위반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 역시도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노340 판결 등).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수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나, 업무상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

거가 없어 학생회 구성원들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어떠한 처벌 규정을 근거로도 피고소인의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역시도 ‘과실범’까지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고의범’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소 엄격한 잣대를 토대로 그 인정범위를 비교적 좁게 판단하여 왔습니다.

본건의 경우 역시도, 학생회에서 회비 납부 여부만을 기재하는 등으로 그 정도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한다면, 특정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할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이외, 제가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학생회비 관련 방침이 인권침해로 해석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다른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